

# 좁도리우대저축특약

## 제1조 특약의 적용

좁도리우대저축(이하"이 예금"이라 한다)거래는 이 특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예금거래기본거래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.

## 제2조 예금의 운영

- ①이 예금은 사랑의좁도리운동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회원(거래자) 및 금고가 십시일반으로 출연하여 “좁도리기금” 을 조성한 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공익상품이다.
- ②이 예금은 불입횟수에 관계없이 자유적립식으로 예금할 수 있다.

## 제3조 불입금액 및 계약기간

- ①이 예금의 1회차 예입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고 월간 입금가능액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1. 신규일로부터 1개월 이내 :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.
  2. 신규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: 2천만원 이내
- ②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
## 제4조 우대금리의 적용

이 예금은 1회차 예입액에 한하여 금고에서 정한 예치기간별 기본이율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조 이자 등

- ①이자는 해지 청구하는 때에 각 예입금마다 예치기간별로 금고에서 정한 차등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되 분할 지급할 수 없다.
- ②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.
  1. 만기후 1년 이내 : 만기일 현재 고시된 정기에탁금 1년제 정상이율의 1/2
  2. 만기후 1년 초과 : 보통예탁금이율

## 제6조 기금의 출연 및 지원

- ①이 예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조성한다.
  1. 예금주 : 1회차 예입액에 대하여 0.1% 출연. 단, 산출된 기금이 1,000원 미만일 때에는 1,000원으로 함.
  2. 금 고 : 예금주가 받는 세후 이자의 2%이내
- ②기금은 금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지원한다.

## 제7조 영수증 발급

좁도리기금 출연시 그 내역을 전산 인자하여 해지계산서를 교부하며 예금주의 별도 요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기부금영수증의 교부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부금손비인정 단체에 기부한 때에 한한다.